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7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엄태영

이종배 • 권성동 • 윤한홍

박수영 • 김석기 • 김소희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팬테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받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

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임.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및 나목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때에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환급 신청
 - 2.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거나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부의 5 주소기었으 100부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u>०</u>] 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u>2026년 12월</u>
31일
l (점해고 가스)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및

나목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 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때에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급 신청
- 2.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3자에게 양도
-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거나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44 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